대법원 2024도220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사건 보도자료

대법원 공보연구관실(02-3480-1895)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및 그 비서실장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특별채용 절차에 의한 합격자를 내정하고 실무 담당 공무원들에게 공개경쟁시험을 가 장한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공무원의 임 용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임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①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고 (대법원 2024. 8. 29. 선고 2024도2201 판결), ② 국가공무원법 제44조, 구 교육공무원법(2022. 10. 18. 법률 제189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및 형법 제123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 내지 기각하였음(대법원 2024. 8. 29. 자 2024초기224 결정 및 2024초기763 결정)

1. 사안의 개요

가. 당사자의 지위

- 피고인 1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 피고인 2 ⇒ 2018. 6. 31. ~ 2020. 8. 12. 서울특별시교육청 총무과 소속 기간제 공무직 근로자 또는 교육감 비서실장
- A ⇒ 서울특별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중등인사팀 장학관
- B ⇒ 서울특별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중등인사팀 장학사

나. 공소사실의 요지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피고인 1은 2017년 하반기부터 전교조 서울지부로부터 전교조 소속교사 甲, 乙, 丙, 丁 등 4명에 대해 특별채용을 요구받았고, 2018년 상반기부터는 위 4명 이외에도 戊에 대해 특별채용을 요구받았으며, 피고인 2로부터 甲 내지 戊에 대한 특별채용을 권유받았음
- 피고인들은 2018. 7.경 甲 등 5명을 채용하기 위한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1은 2018. 7. 말경 장학관 A에게 甲 등 5명에 대한 특별채용 검토를 지시함
- 피고인 1은 2018. 7. 31.경 A, B로부터 중등교육과의 '甲 등 5명은 선거 관련 벌금형을 받아 법령에 따라 당연퇴직된 경우로서 이들을 특별 채용하는 것은 사회적 공감대가 부족하여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고, 임용고시 준비생과 형평성에 비추어 5명 특채는 무리'라는 반대의견이 명시된 「2018 戊 등 5명 특별채용 추진일정 및 검토(안)」을 보고받고, 그 무렵 교육정책국장 C, 중등교육과장 D로부터 같은 취지로 재고를 요청받음
- 그런데도 피고인 1은 2018. 8. 초순경 장학관 A에게 특별채용 절차를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뒤 2018. 8. 9. 중등교육과에서 기안한 「 2018. 교육공무원(중등교원) 특별채용 추진(안)」을 단독으로 결재하면 서 장학관 A에게 '향후의 특별채용 절차는 피고인 2에게 보고하고 그 의 지시를 받아 진행하라'고 지시함
-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장학관 A와 장학사 B를 통해 법률자문 등 특별채용 절차 업무를 진행하게 하던 중, 피고인들은 부교육감 E로부터 '5명을 내정한 채 진행하는 특별채용은 경쟁 공개전형을명시한 개정 교육공무원임용령에 위반된다'는 의사를 전달받았는데도, 피고인들은 甲 등 5명을 내정한 특별채용 절차를 피고인 1의 단독결재로 진행하기로 하고, 2018. 10. 25. 장학관 A와 장학사 B로 하여금 '교육양극화 해소와 특권교육 폐지 및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 등 공

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퇴직 교사'를 특별채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퇴직 교사 특별채용 처리 지침(안)」을 작성하게 한 후 장학사, 장학관, 과장, 국장, 부교육감 등의 기안 및 검토 결재 없이 피고인 1이 단독으로 결재함

- 이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5명을 내정한 특별채용 절차를 계속 진행하기 위해 장학관 A와 장학사 B로 하여금 2018. 11. 14. 「❷ 중등교육공무원 특별채용 관련 심의 의뢰」 공문을 작성하게 하고, 2018. 11. 22. 「❸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개최 안내」 공문을 작성하게 하는 등 위 특별채용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한사전절차를 진행함
- 피고인들은 2018. 11. 23.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 특별채용에 대해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를 '교원의 권익 확대'로 변경하고, '공적 가치 기여자 특채는 임용권자 결정에 따르되,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 있고, 임용권자의 친분 내지 특수관계 등에 특혜나 보상이라고 평가될 만한 사정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으로 부분인용 결정을 하였는데도, 2018. 11. 29. 장학관 A와 장학사 B로 하여금 '방침: 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퇴직 교사를 채용함, 지원자격: 교육양극화 해소, 특권교육 폐지 및 교원의 권익 확대등 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자'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④중등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게 한 후 피고인 1이 단독으로 결재함
- 피고인들은 위 기본계획에 따라 장학관 A와 장학사 B로 하여금 2018. 11. 30. 「중중등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계획 공고」를 하게 하고, 2018. 12. 11. 지원자 17명에 대한 1차 전형을 실시하여 형식적 근무요건 미달자 3명을 탈락시키고, 2018. 12. 17. 나머지 지원자 14명에 대한 서류 및 면접 절차를 실시하면서, 2018. 12. 20. 「중중등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전형 최종 결과 및 채용 인원 확정」 공문을 작성하게 한 후 피고인 1이 甲 등 5명의 이름 옆에 자필로 서명하는 방법으로 최초 내정한대로 甲 등 5명을 특별채용하는 것으로 확정함

● 이로써 <u>피고인들은 공모하여 甲 등 특정 5명을 임용하기 위해</u> 교육감의 교사 인사권을 남용하여 특별채용 담당 실무자인 장학관 A와 장학사 B로 하여금 위 ①~⑥ 공문을 작성하게 하는 등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한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

■ 국가공무원법 위반

-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특별채용 담당 실무자인 장학관 A와 장학사 B로 하여금 ●~⑥ 공문을 작성하게 하여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한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피고인 2는 2018. 12. 초순경 F에게 전화하여 면접심사위원 위촉을 의뢰하면서 '강제로 퇴직한 교사들을 특채를 통해 구제하려고 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의원면직이 아닌 강제퇴직한 해고자를 대상자로 한 특별채용임을 설명하고, 면접일인 2018. 12. 17. 14:13경 면접심사 중인 심사위원 F, G에게 "丁샘은 여러 우려가 있지만 끌고 가는 게 감님 생각입니다"라는 문자를 보내 채용 대상자인 丁에게 고득점을 부여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는 행위를 함
- 이로써 <u>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가공무원인 교원공무원의 임용에 관하</u> 여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함

2. 소송경과

가. 제1심 ➡ 유죄

- 피고인 1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 2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나. 원심 ➡ 쌍방 항소기각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판단
 - 피고인 1의 이 사건 특별채용에 관한 직권의 행사는 실질적으로는 공 개경쟁전형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

위를 하여 직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함

- 구 교육공무원법(2022. 10. 18. 법률 제189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 조 제1항 제2호는 임용 예정직에 상응하는 연구실적 또는 근무실적이 3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구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 제2항은 위와 같은 특별채용을 할 경우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음
- 그런데 이 사건 특별채용의 공모조건[교육양극화 해소, 특권교육 폐지 및 교원 의 권익 확대 등 공적가치 실현에 기여한 자]은 최소한의 실질적인 공개경쟁성을 확보하지 못하였음
- 이 사건 특별채용 절차가 시작된 계기와 목적(전교조의 요구에 따라 甲 등 5인을 특별채용)이 피고인 1의 특별채용 처리 지침안 결재 이후 인사위원 회뿐 아니라 최종 채용심사 단계까지 이어진 것으로 판단됨
- 피고인 1은 계선조직¹⁾ 공무원들의 지속적이고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단독결재 등을 통해 이 사건 특별채용을 진행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2로하여금 그 구체적인 절차를 진행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실질적인 공개경쟁성확보를 위한 노력은 하지 않았음
- 법률검토의 구체적인 경위나 내용('공모요건 부합 대상자가 다수 존재하지 않고 특정되거나 소수 특정인에게만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공 개경쟁이 배제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등의 내용 포함)에 비추어 보면, 2 차례의 법률검토를 거쳤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특별채용의 공개경쟁성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없고, 직권남용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음
- 전교조 소속 후보와 후보단일화를 하고 해당 후보가 공동선대본부장을 맡은 상태에서 진행된 선거를 마친 후, 곧바로 전교조가 강력하게 요청하였던 전교조 소속 퇴직 교사 5명(위 공동선대본부장 포함)을 임용한 이 사건 특

¹⁾ 系線組織: 계층제의 구조를 가진 조직에서 그 조직의 본래적 기능을 직접 수행하여 조 직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조직, 이 사건에서는 부교육감, 교육정책국장, 중등교육과 장 등 본래 결재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을 말함

별채용은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고 공정하여야 할 공직임용절차가 임용권자 의 사적인 특혜나 보상을 위해 변질된 것으로 보이기에 충분함

-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있는 A와 B로 하여금 그들이 준수하여야 할 직무상 원칙과 기준에 위반되는 방식으로 이 사건 특별채용을 진행하게하였으므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함
 - A와 B가 이 사건 특별채용 공모조건을 기초로 특별채용 처리지침(안) 등 6 개 문서를 작성하고 보고한 행위 ⇒ 공모조건이 최소한의 공개경쟁성을 결 여하고 있으므로 위 행위는 법령상 기준을 위반한 것에 해당함
 - A가 인사위원 및 심사위원에게 특정 검토대상자가 있고 이들이 어떤 지원 자인지 직·간접적으로 알게 한 행위 ⇒ 공개전형의 실질에 위반되어 법령 이 정한 기준과 절차에 위반됨
 - A가 채점 결과 취합 후 심사위원 H로 하여금 채점표를 재작성하게 하여 순위를 조정한 행위 ⇒ 이 사건 특별채용 기본계획상 순위결정 기준, 익명 처리의 취지, 공개경쟁채용 심사위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위반됨
- A, B의 직무 수행은 피고인 1의 특별채용 지시에 따른 행위일 뿐 아니라 공모조건이 이례적인 이 사건 특수채용의 특수성에서 기인한 것임
 ⇒ 피고인 1의 직권을 남용한 지시와 A와 B가 한 의무 없는 일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됨
- 피고인들의 공모관계도 인정됨

■ 국가공무원법 위반 부분 판단

●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장학관 A와 장학사 B로 하여금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한 이 사건 특별채용을 추진하게 하고, 심사위원들에게 강제퇴직 한 해고자를 대상자로 한 특별채용임을 이야기하거나 문자를 보내는 등으로 교육공무원 임용과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됨

3. 대법원의 판단

가, 쟁점

- 공소사실 불특정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여부
 - 피고인 1이 교육감으로서 특별채용절차 진행을 지시한 것이 직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
 - A와 B가 특별채용 절차 업무를 수행한 것이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는지 여 부
 - 피고인 1의 지시와 A 및 B의 특별채용 절차 업무 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 국가공무원법 위반죄의 성립 여부
-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인정 여부
- 관련규정의 위헌 여부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국가공무원법 위반죄의 죄수 관계

나. 판결 결과

●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원심 수긍)

다. 판단 내용

●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사실의 특정, 직권남 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죄의 성립, 공동정범, 죄수관계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거나 위헌인 법령을 적용한 잘 못이 없음

라. 피고인 1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사건 결과

■ 2024초기224

● 국가공무원법 제44조 부분 **➡ 각하**

제44조(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

누구든지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 된다.

- 국가공무원법 제44조의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부분을 '임용절차진행 자체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주장은 법원 의 해석을 다투는 것이므로, 부적법함
- → 교육공무원법(2022. 10. 18. 법률 제189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
 조 제1항 부분 ➡ 기각

제12조(특별채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 채용을 할 수 있다.

(각 호 생략)

■ 법률조항의 규정 형식, 문언, 각 호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에 의하여 보충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 2024초기763

● 형법 제123조 ➡ 기각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u>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u> 사람의 권리행 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이유 없음2)

²⁾ 최근 헌법재판소 2024. 5. 30. 선고 2021헌바55, 2021헌바307, 2022헌바27, 2023헌바106(병합) 결정을 통하여 형법 제123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재확인되었음